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김희걸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647호

다. 제출일자 : 2019. 5. 21.

라. 회부일자 : 2019. 5. 24.

2. 제안사유

- 도시철도공채의 만기 후 시효만료로 시민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민원도 잦으므로 상환공고 또는 상환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약칭은 목적규정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목적규정에서 사용된 약칭을 입법기술 원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시철도공채 상환의 공고와 안내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간 : 2019. 5. 29 ~ 6. 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수정가결

- ▶ 신설 제4조의2 제1항의 상환개시일 30일 전 공고 의무에 대하여,
 - 동조 제2항에서 상환 예정 전년도에 개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공고를 30일 전에 할 경우 안내시점이 상환 전년도에 집중되고 오히려 공고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 ※ 예 시 】

- ①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규정함에 따라 1월 매출 공채의 발행일은 1월 31일이 됨
- ②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초일(1월 31일)은 산입하지 않음
- ③ 이 경우 기산점은 1월 30일 24:00, 30일 전은 전년도 12월 31일 24:00임

- 他지자체는 공고시점을 상환개시일 10일 전이나 직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일 전) 대전 (직전) 부산, 광주, 인천, 대구

- ▶ 따라서 상환개시일 30일 전을 20일 전으로 조정 필요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중 미상환 채권에 대해 시효 만료 전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관련

- 서울시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¹⁾ 및 금액의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음

※ 참고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근거

「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 대상 : 1.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 / 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는 자 / 3.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 4.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는 자 / 5.식품영업 허가를 받는 자 / 6.관광숙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 7.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는 자 / 7의2.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7의3.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는 자 / 8.사행행위영업 허가를 받는 자 / 9.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0.엽총 소지 허가를 받는 자 / 11.수렵면허를 받는 자 / 12.주류판매업 면허를 받는 자 / 13.주류제조업 면허를 받는 자 / 1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하는 자 / 15.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 16.카지노업 허가를 받는 자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는 원금과 이자를 동 조례에²⁾ 따라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토록 하고 소멸시효를 법에³⁾ 따라 상환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규모는 연평균 475,154건에 7,365억 40백만원인 반면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상환 채권 규모는 연평균 3,513건(발행 대비 0.74%)에 13억 46백만원(발행 대비 0.18%)인 것으로 나타남

※ 참고 : 최근 5년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 균	합 계
채권발행	건수(건)	455,162	492,023	485,277	476,875	466,434	475,154	2,375,771
	금액(백만원)	631,780	717,818	768,453	790,314	774,339	736,540	3,682,704
소멸시효 만료 미상환 채권	건수(건)	6,412	7,486	4,828	2,190	997	3,513	17,567
	(발행 대비 비율)	(1.41%)	(1.52%)	(0.99%)	(0.46%)	(0.21%)	(0.74%)	(0.74%)
	금액(백만원)	1,852	1,667	1,328	1,059	825	1,346	6,731
	(발행 대비 비율)	(0.29%)	(0.23%)	(0.17%)	(0.13%)	(0.11%)	(0.18%)	(0.18%)

■ 공채상환 공고 관련(안 제4조의2제1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공채 상환개시일 30일 전에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공채의 소멸시효일 등’을 일반일간신문⁴⁾ 2개 이상을 통해 공고토록 하는 것임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3) 「도시철도법」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서울시는 동 조례 시행규칙을⁵⁾ 통해 공채 상환개시일 10일 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만약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상환개시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할 경우 1월 매출 공채의 발행일은 1월 31일 이므로 공고시점(당해년도 1월 1일)과 공고비 지출시점(전년도 12월)의 회계연도가 달라 예산 집행의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고기간 연장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 강화와 공채상환 행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채상환 공고 기간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임

■ 공채상환 안내 관련(안 제4조2제2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해 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토록 하는 것임
-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의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미환급금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방침을 수립하여⁶⁾ 2019년부터 소멸시효 미환급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안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채매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상환 채권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미상환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상환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실시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공채상환 공고)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6)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 교통정책과-27783(2018.10.31.)

인정하는 ‘채무승인7)’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8)’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행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지속되므로 사실상 소멸시효 규정이 무력화 되는 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적정 행정력 투입, 소멸시효 규정 무력화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이 되도록 미상환 채권 보유자에 대한 우편 개별 안내의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7) 채무승인 관련 판례【소유권이전등기(2012다45566)】

: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8)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